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립괴산호국원에 조성된 자연장지의 안장을 위해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방법 관련 “매장용 및 안치용”외 “자연장용”을 추가 신설하고,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을 정함(안 별표 5·별표 6)
- 나. 개인식별표의 설치방법 등 세부사항을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7조의2)
- 다.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또는 합장 관련 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유족들의 안장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장신고필증” 제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항제4호, 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안 별표 3 제3호나목1)·2), 안 별지 제6호서식)
- 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11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에 따라, 이장비용 신청서 서식 신설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 요청에 필요한 서식 등 신설(안 제9조의3,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을 “화장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 중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을 “화장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2 중 “같다”를 “같으며, 개인식별표의 면적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이장비용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 이장비용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자와 안장자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별

지 제10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영 제29조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합동묘역의 사진 1장 및 합동묘역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이 나타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 영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묘역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 및 지정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통지하는 경우에는 묘역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와 해제 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5호”를 “법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5호 중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을 “화장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4호 중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을 “화장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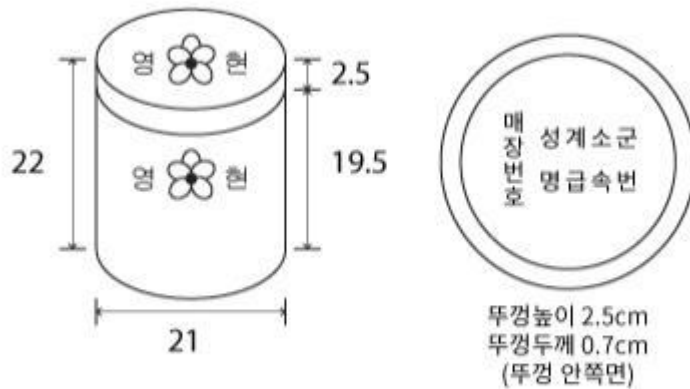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장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5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이장 또는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장용 유골함 및 개인식별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장 또는 이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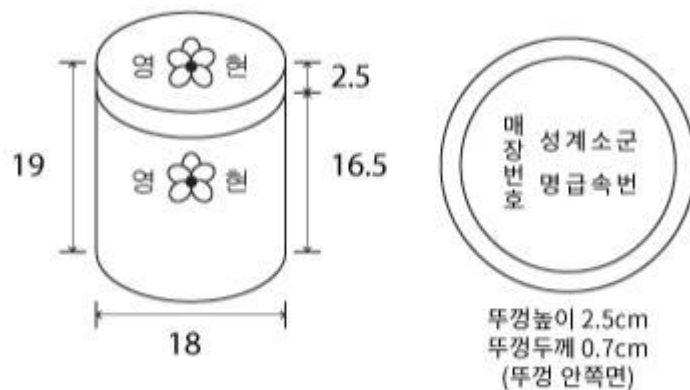
유골함 규격 및 제작방법(제7조 관련)

가.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



1.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 청색 무궁화를 압입(壓入)하고, “영현” 이라 표시하되, 안치용 유골함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유골함의 뚜껑 이면에는 성명, 계급, 소속, 군번, 매장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기입한다.

나. 자연장용 유골함



1.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 무궁화를 압입(壓入)하고, “영현” 이라 표시한다.
2. 유골함의 뚜껑 이면에는 성명, 계급, 소속, 군번, 매장번호를 기입한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1. 개인식별표의 재질은 인조대리석 또는 동판 등 가공 및 글자를 새기기 쉬운 재질로 하고,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개인식별표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유번호	
육군일병 (0.6cm) 김충성 (1cm) 1929.10.11. 경기 의정부에서 출생 1950.12.25. 강원 철원에서 사망 공적사항	배위 (또는 부군) 이애국 (0.8cm) 1930.1.1.~1999.10.1.
父 ○○○ 母 ○○○ 처 ○○○ 아들 ○○○ 딸 ○○○	

- 가. 개인식별표의 상단에는 안장자의 신분(계급), 성명, 출생일·출생지, 사망일·사망지 및 공적사항을 가로 6줄 이내로 기재한다.
- 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 성명 등의 오른쪽에 “배위 ○○○” 또는 “부군 ○○○” 과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가로 2줄로 기재한다.
- 다. 개인식별표의 하단에는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기재한다.
- 라. 개인식별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기재내용 외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유족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 안장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안장 (이장·영정 봉안·위패 봉안·자연 장)대상자	성명		신분		계급·직위	
	주민등록번호		소속		군번	
	주소					
	출생지		사망지		사망일	
	안장자격		훈격·등급		사망구분 []전사 []순직 []일반사망	
	배우자	[]있음(명) []없음			보훈번호	
	안장방법	[]봉안당(봉안담) 안치				안장 희망일
		[]묘지 매장 []영정봉안				
		[]위패봉안 []자연장 안치				
	※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		현 안장지				
[]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묘비번호 (안장위치)		묘역(위패) 판 호		
이장 희망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안장대상자가 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대원·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안장대상자가 소방공무원·의사상자·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4. 안장대상자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가장으로 장의된 사람·무공수훈자 및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의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5.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화장증명서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6.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무공수훈자·장관급 장교 또는 10년 및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및 군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안장대상여부 확인	➔	안장
신청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보훈처장 국방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확인

담당	주무	과장	기관장
		- 9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안장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안장자와의 관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안장자	성명	신분	계급·직위	
	소속	군번	사망일	
	안장위치	[]봉안당(봉안담) 안치	실 호	안장일
	[]묘지 매장	묘역	호	
[]위패봉안	판 면	호		
[]자연장 안치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일	
	주소	사망일		
	합 장	희 망	일 시	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묘지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화장증명서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묘 적 부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안장자	성명	신분	계급·직위
	주민등록번호	소속	군번
	주소		
	출생지	사망지	사망일
	안장자격	훈격·등급	사망구분 []전사[]순직 []일반사망
	배우자 [] 있음(명) [] 없음		보훈번호
	안장위치 [] 봉안당 안치 실 호 [] 묘지 매장 묘역 호 [] 위패실 봉안 판 면 호 [] 자연장 안치 구역 판 호	종교 안장일	
배우자	성명	출생일/사망일	합장일
유족	성명	생년월일	안장자와의 관계
	주소		
	변경주소		
	연락처		
참고 사항			
확인			
담당	주무	과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이장 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안장자	성명			보훈번호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유공자와의 관계			
	주소						
이장 현황	전 안장지						
	묘지구분	☐ 선산 ☐ 자기의 산 ☐ 타인의 산 ☐ 기타()					
	이장지 (국립묘지)						
	이장일자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 신청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지급결정	➔	신청인에게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훈(지)청]		처 리 기 관 [보훈(지)청]		처 리 기 관 [보훈(지)청]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2. 안장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요청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유자나 유족 또는 관리자)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묘역 현황	명칭	조성 연월일	
	소재지		
	구분	☐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 참전유공자 합동묘역 ☐ 민주유공자 합동묘역	
	면적	안장 현황(기수)	
	시설물 현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합동묘역의 사진 1장 2. 합동묘역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이 나타난 자료 3. 묘역 소유자등이 상이할 경우 :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요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협조기관	처리기관 (담당부서)
	지방보훈청(보훈과) 보훈지청(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과)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지정 요청	접수·검토	협의	지정 결정
		(지정 의뢰)	
지정서 수령	(지방보훈관서 경유)		(지정서 발급)

확 인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관리번호:

국가관리묘역 지정서

명 칭:

소재지:

내 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이장·영정봉안 및 위패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u>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u>	5. ----- <u>화장증명서</u> -----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	⑦ ----- ----- ----- -----

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생략)

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4. 화장증명서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

----- 같으며, 개인식별표의 면적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제9조의3(이장비용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 이장비용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신 설>

<신 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자와 안장자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영 제29조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합동묘역의 사진 1장 및 합동묘

<신 설>

역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이 나
타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
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
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
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 영 제32조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관
리묘역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
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통
지하는 경우에는 그 묘역의 명
칭·관리번호·소재지 및 지정시
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
처장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의 해
제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보
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가 통지하는 경
우에는 묘역의 명칭·관리번호·
소재지와 해제 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